

2020.07.14.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 원
일급 69,760 원
월급 1,822,480 원

공인노무사 **신 정 욱**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1.5% 상승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급여관리에 미칠 영향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만을 설명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자문 노무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사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사업장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매월지급 상여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월 환상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즉,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까지는 매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금결정시 유의해야 합니다.

년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월급
2019	25%	436,288	7%	122,161	1,745,150
2020	20%	359,062	5%	89,766	1,795,310
2021	15%	273,372	3%	54,674	1,822,480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고, 월 환산액이 1,822,480원이 되므로, 정기상여금은 **273,372원**을,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2021 급여설계 샘플1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정기상여	-
최저월급총액	1,822,480
최저임금산입기준	
1)복리후생	54,674
2)정기상여	273,372

월급총액	1,877,154
기본급	1,577,154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정기상여	-

■ 2021 급여설계 샘플2

식대	-
차량유지비	-
정기상여	300,000
최저월급총액	1,822,480
최저임금산입기준	
1)복리후생	54,674
2)정기상여	273,372

월급총액	2,095,852
기본급	1,795,852
식대	-
차량유지비	-
정기상여	300,000

급여에 기본급 이외의 항목을 두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금액은 30만원으로 같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로 30만원을 지급하는 A사와 정기상여금 30만원을 지급하는 B사의 경우 내년도 급여 책정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A사는 기본급을 1,577,154원으로 할 수 있지만, B사는 1,795,852원으로 해야 하므로 월 급여 총액이 22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2. 기본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새로이 임금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호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호봉제에 따라 기본급이 책정되고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봉제가 아닌 사업장이라면, 얼마든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본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경방법은 임금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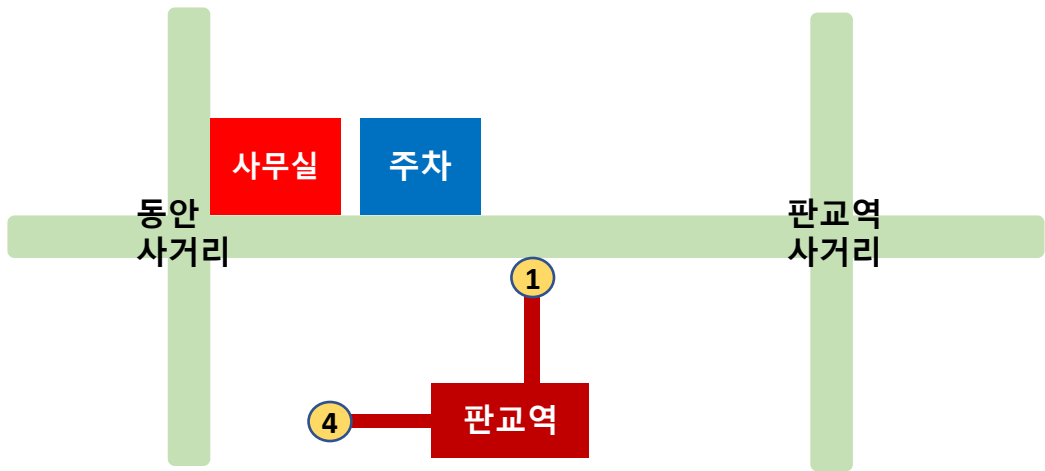
3.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에 변화를 주려면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급 이외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로 지급하는 A사와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B사의 내년도 임금 인상 폭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2024년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벌어질 현상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임금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금체계의 변경은 기본급의 금액 변경과는 다른 문제로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함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축소하고자 할 때 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다음 가지 입니다.

- 1) **충분한 공지 기간**을 부여하고 동의서명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 2)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 3)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동의 서명을 진행한다.

물론 기존 취업규칙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자세하게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신설하거나 상세히 개정하는 방법으로 변경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으므로 당 노무법인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신정욱 공인노무사
tjlove73@naver.com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